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3. 11. 28.(화) 14:00~17:3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대회의실)
- 출석위원 : 김기수(위원장), 김상남, 김종현, 김태일,
목수현, 송석기, 이광표, 이상희, 이해은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 | | |
|---|---|-------|
| 1 |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현상변경 | (공 개) |
| 2 |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공 개) |
| 3 | 사적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공 개) |
| 4 | 사적 「서울 독립문」 등 2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공 개) |
| 5 | 「속초 동명동 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공 개) |
| 6 |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공 개) |

【검토사항】

| | | |
|----|-------------------------------------|-------|
| 7 | 「안국동 별궁 후원 전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공 개) |
| 8 |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공 개) |
| 9 | 「디젤동차 672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공 개) |
| 10 | 「안춘천 철교 상판 구조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공 개) |
| 11 | 「부산도시철도 1호선 1편성(舊)」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공 개) |
| 12 |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4」 보수정비 검토 | (공 개) |

【보고사항】

| | | |
|----|--|-------|
| 13 |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등록(면적) 정정 고시 보고 | (공 개) |
|----|--|-------|

심 의 사 항

1.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시 관악구 소재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보호구역에 전시물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보호구역에 전시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시립미술관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77.11.22. 지정)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9-13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9-13
 - ※ 문화재보호구역 내임
 - 신청내용 : 조각작품 3점 야외정원 설치
 - 목적 : 작가 '정현' 개인전 「덩어리」
 - 기간 : '23.12.20.~'24.03.17. (설치 2023.12.11. / 전시 종료 후 원상복구)
 - 설치물 : 지반 굴착 후 콘크리트기초판 설치, 제작된 작품(알루미늄 재질, 바닥 기초플레이트 너비 1.5m)을 기초에 앙카로 고정
 - 작품 1 : 높이 3.5m, 무게 450kg(플레이트 포함)
 - 작품 2 : 높이 6m, 무게 500kg(플레이트 포함)
 - 작품 3 : 높이 2.5m, 무게 400kg(플레이트 포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2.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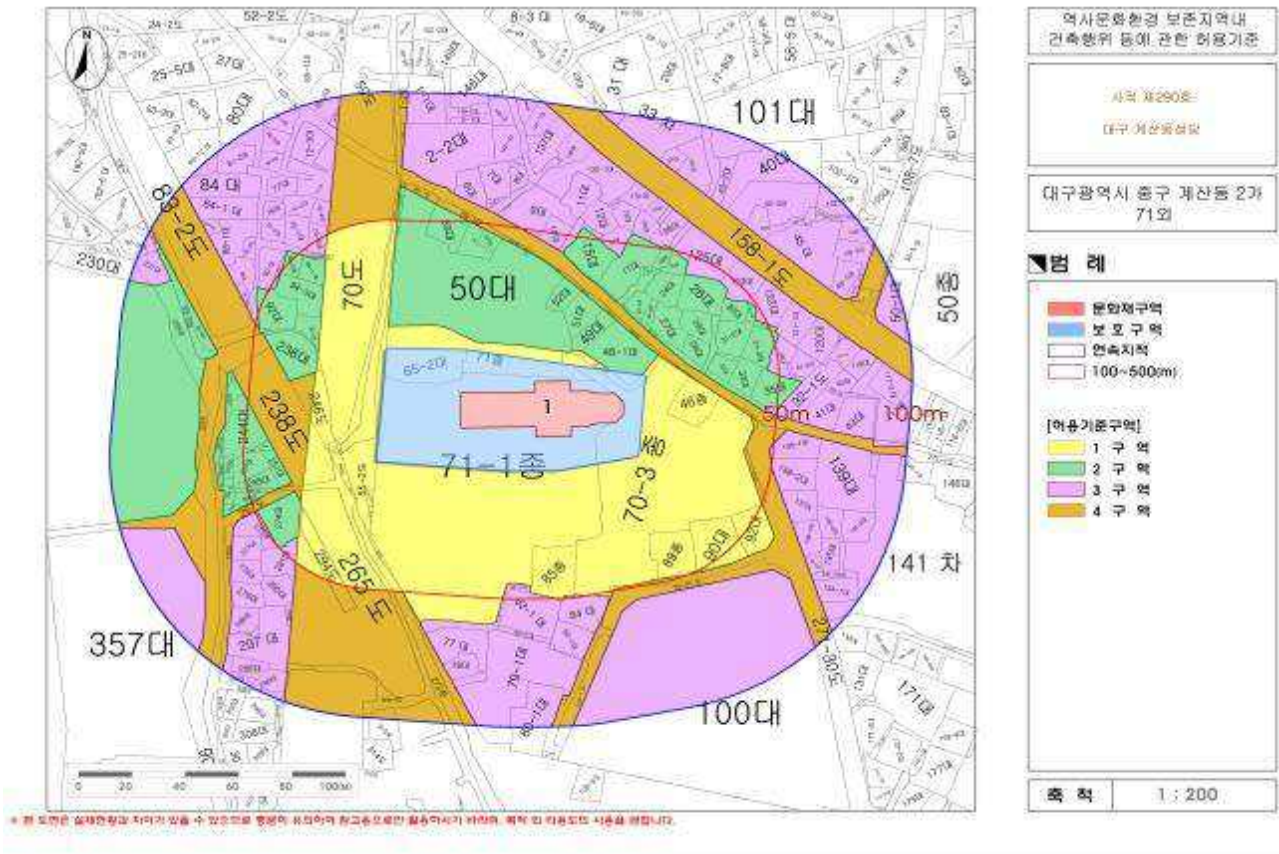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대구광역시 중구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
- (3) 조정 취지
 - 문화재청훈령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2015.6.30.시행) 제4조 별표5에서 허용기준 작성범위로 100m로 고시되었던 내용이 이후 개정에서 삭제되며 허용기준을 재고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 시행
 -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2022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시행(보존정책과)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거쳐 내용반영
- (4) 세부내용
 - 주요 변경사항
 - 허용기준 마련 범위 확대(100m → 200m)
 -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로 변경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건축법 시행령)
 - 태양에너지 설비 조항 신설
 - '개별심의'에서 '개별검토'로 용어 변경
 - 그 외 법률명 명확화 등 용어 정리
 - 향후 GIS 등재 시 구역 범주화: 1구역(개별검토), 2구역(고도제한), 3구역(타법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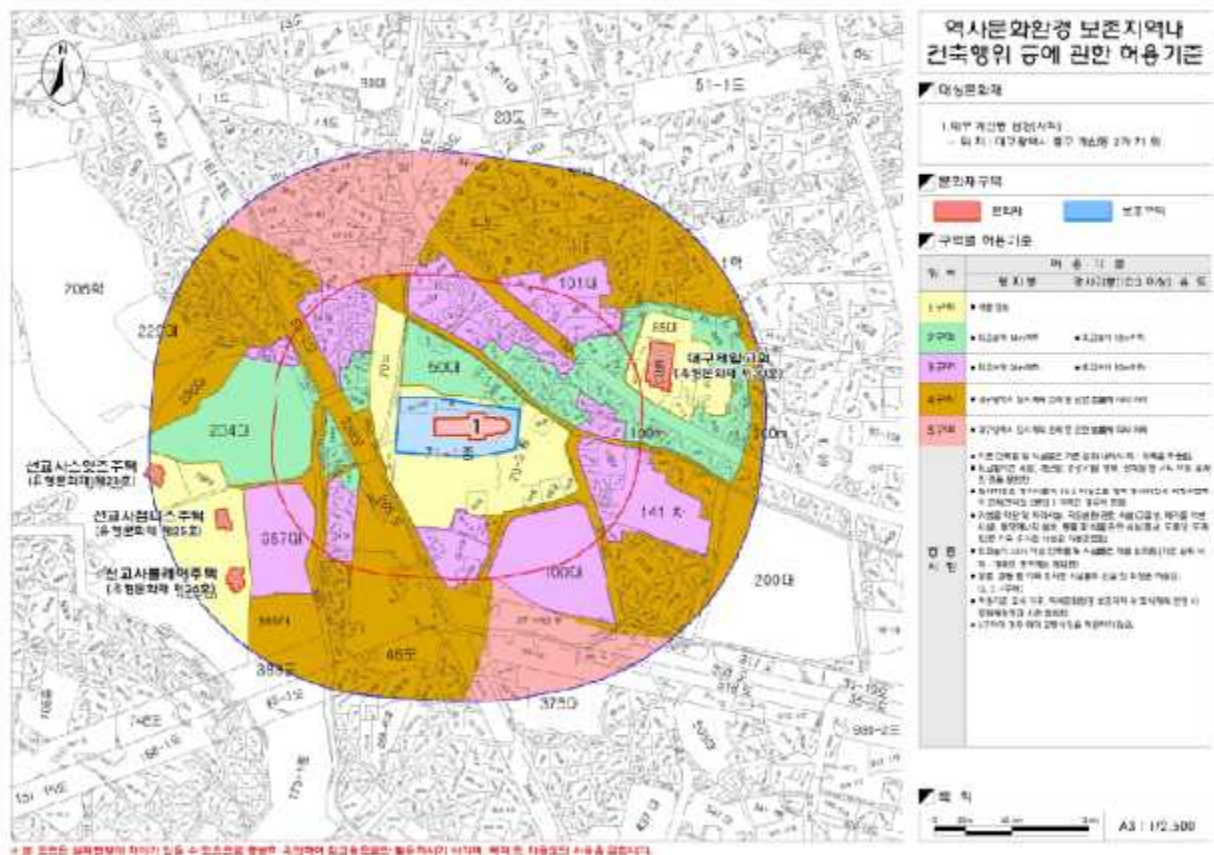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 심의 | |
|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
|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30m 이하 |
| 제4구역 | 대구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1구역 | 개별 검토 | |
|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
| 3구역 | 최고높이 26m 이하 | 최고높이 30m 이하 |
| 4구역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5구역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4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5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



※ 본 도면은 설계현황의 차이를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의 국지적여 하고용은본도면의 용도가 아닌 실제의 현장의 사용용을 따릅니다.

라. 관계전문가 의견

○ 현지조사 의견('23.11.20.): 문화재위원 ○○○

- 현재 문화재 주변 100m로 설정되어 있는 허용기준 마련 범위를 200m로 조정하는 안이며, 현장조사 결과 제시된 안으로 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금번 조정안에 따라 편입되는 문화재 남측 달구벌대로(계산오거리 동측) 주변 구역 조정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4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구역별 허용기준 공통사항에서 금번 조정안에 제시된 “5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이란 항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취지에 맞지 않는 조정이라고 판단되며,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서면 의견('23.11.20.) 문화재전문위원 ○○○

- 본 문화재 주변은 동,서 양측에 시지정문화재가 위치해 있고 북측의 남성로 읍성길과 영남대로, 달서천등 지정되지 않은 역사문화자산이 분포되어 있음.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공간적 특징을 고려 할 때 1구역에서 5구역에 이르는 구역 재설정과 허용기준 조정 변경안은 타당.
- 다만, 공통사항 중 ‘5구역의 경우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는’항목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출석 9명 / 부결 9명

3. 사적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사적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도립대구병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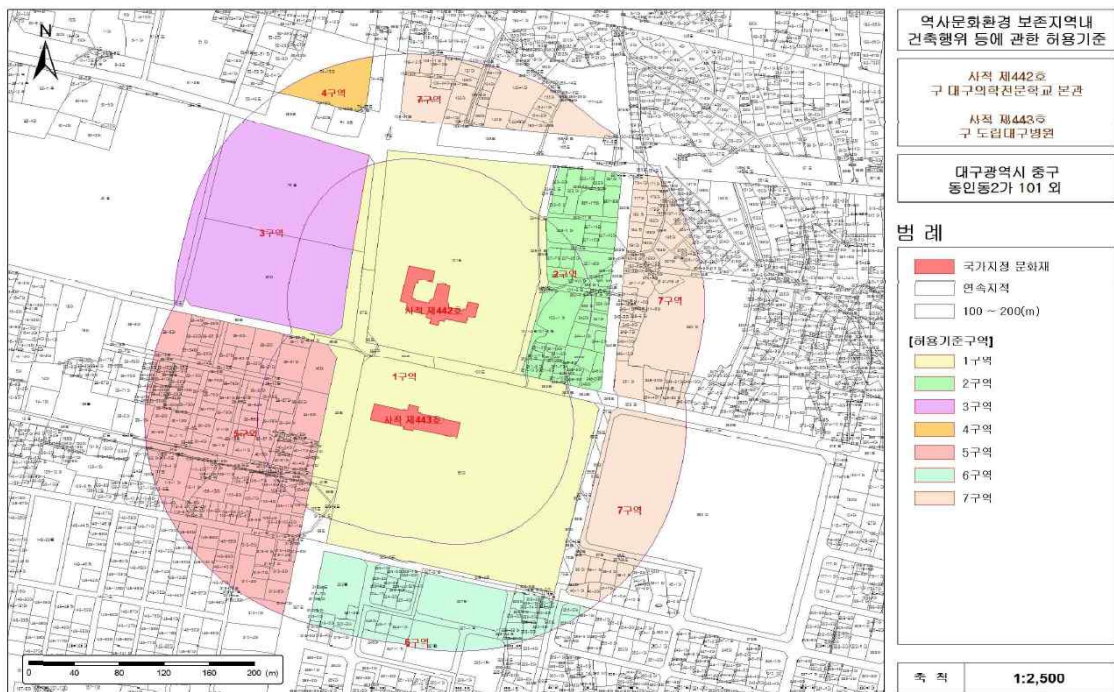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사적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도립대구병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구광역시 중구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도립대구병원」
- (3) 조정 취지
 - 기존 고시된 사항이 도로 부분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지 않아 202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 시행
 -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2022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시행(보존정책과)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거쳐 내용반영
- (4) 세부내용
 - 주요 변경사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로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 구역 순서 정리
 -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로 변경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건축법 시행령)
 - 태양에너지 설비 관련 조항 신설
 - '개별심의'에서 '개별검토'로 용어 변경
 - 그 외 법률명 명확화 등 용어 정리
 - 향후 GIS 등재 시 구역 범주화: 1구역(개별검토), 2구역(고도제한), 3구역(타법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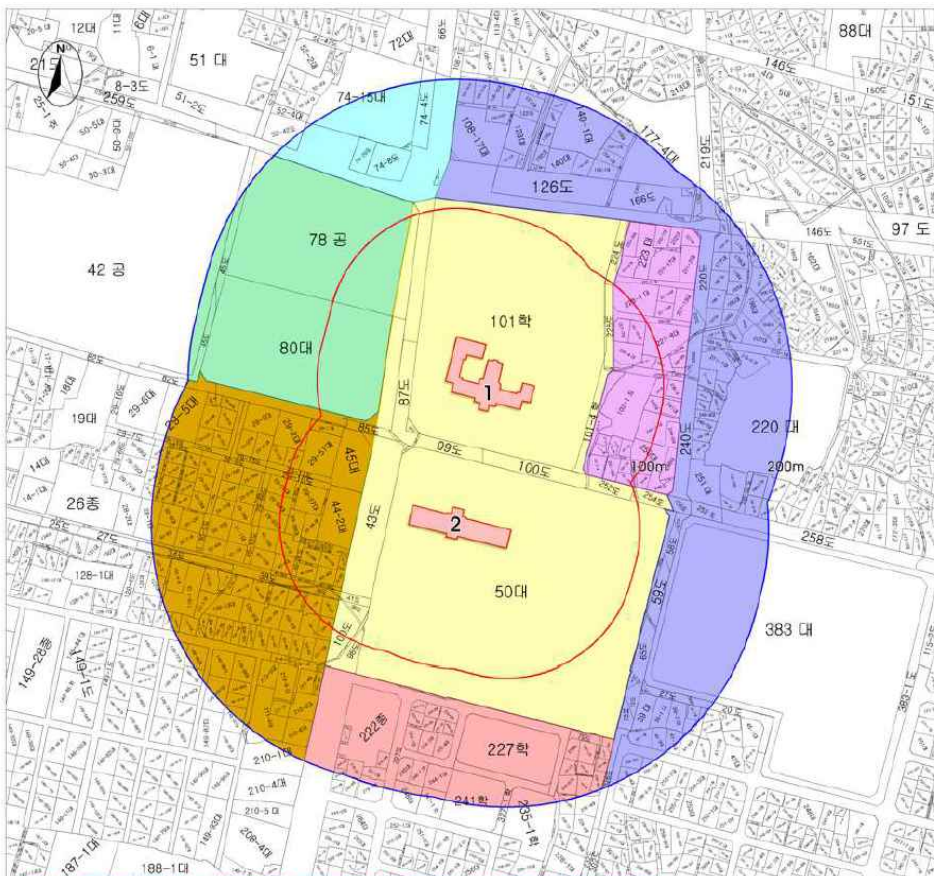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심의구역 ○ 건축물 허용용도 : 학교(대학교), 의료시설(종합병원) | |
| 제2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 ○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온실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변전소, 안마시술소 | |
| 제3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심의구역 ○ 건축물 허용용도 : 공공용 시설 | |
| 제4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 | |
| 제5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37M 이하 ○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온실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변전소, 안마시술소 | |
| 제6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40M 이하 ○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온실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변전소, 안마시술소 | |
| 제7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66M 이하 ○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검토 ○ 건축물 허용용도 : 학교(대학교), 의료시설(종합병원) | |
| 제2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검토 ○ 건축물 허용용도 : 공공용 시설 | |
| 제3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25m 이하 | |
| 제4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37m 이하 | |
| 제5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40m 이하 | |
| 제6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50m 이하 | |
| 제7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66m 이하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대상문화재
 1.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사적)
 2. 구 도림대우병원(사적)
 -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평안동2가 101외

■ 문화재구역
 문화재

■ 구역별 허용기준

| 항 목 | 허 용 기 준 | |
|---------|---|------------------|
| | 평 지 붕 | 경사지붕(10:3이상) 용 도 |
| 1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검토구역 ● 건축물 허용용도 : 학교(대학교), 의료시설(종합병원) | |
| 2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검토구역 ● 건축물 허용용도 : 공공용 시설 | |
| 3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25m 이하 | |
| 4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37m 이하 | |
| 5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40m 이하 | |
| 6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50m 이하 | |
| 7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66m 이하 | |
| 관 령 사 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 |

■ 표 적
 0 25m 50m 125m A3 : 1/2,500

* 본 도면은 실재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대반이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라. 관계전문가 의견

○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23.11.2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외되었던 도로부분에 대한 편입 조정안은 원안대로 조정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 서면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23.11.2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안) 타당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변화에 따른 구역 설정 타당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1, 2구역의 허용용도 조항을 삭제하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4. 사적 「서울 독립문」 등 2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사적 「서울 독립문」 등 2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사적 「서울 독립문」 등 2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각 문화유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서울 독립문」 등 28개소

| 연번 | 명칭 | 연번 | 명칭 |
|----|---------------------|----|--------------|
| 1 | 서울 독립문 | 15 | 구 공업전습소 본관 |
| 2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 16 | 서울 이화장 |
| 3 |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 17 |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
| 4 |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 18 |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
| 5 |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 19 |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
| 6 |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 20 | 안국동 윤보선가 |
| 7 |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대학원) | 21 | 서울 경교장 |
| 8 | 만해 한용운 심우장 | 22 | 환구단 |
| 9 | 서울 용산신학교 | 23 |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
| 10 |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 24 | 서울 한국은행 본관 |
| 11 |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 25 | 서울 약현성당 |
| 12 | 서울 우정총국 | 26 | 서울 정동교회 |
| 13 | 서울 대한의원 | 27 | 서울 명동성당 |
| 14 | 구 서울대학교 본관 | 28 | 구 서울역사 |

(3) 조정 취지

-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2022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시행(보존정책과)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거쳐 그 내용을 반영

(4) 세부내용

-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로 변경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
 - 태양에너지 설비 조항 신설
 - '개별심의'에서 '개별검토'로 용어 변경
 - 그 외 법률명 명확화 등 용어 정리
 - 향후 GIS 등재 시 구역 범주화: 1구역(개별검토), 2구역(고도제한), 3구역(타법처리)
- ※ 도면 변경 없음

라. 문화유산별 조정(안)

(1) 서울 독립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심의함.(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에 한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기존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 |

- (2)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스관,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3)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서울시(성북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4) 만해 한용운 심우장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6m 이하 |
| 제4구역 | 서울시(성북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 제3구역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16m 이하 |
| 제4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1,2구역)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5) 서울 용산신학교,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
|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
| 제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6) 서울 고종 어극 40년 청경기념비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 |
| 제2구역 |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 |
| 제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7) 서울 우정총국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8) 서울 대한의원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 |
| 제2구역 | 개별심의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 |
| 제2구역 | 개별검토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9) 구 서울대학교 본관, 구 공업전습소 본관, 서울 이화장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10)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 |
|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0m 이하 |
|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
| 제4구역 |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 |
|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0m 이하 |
|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
| 제4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4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11) 안국동 윤보선거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최고높이 4m 이하 | 최고높이 6m 이하 |
|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0m 이하 |
| 제4구역 | 최고높이 12m 이하 | |
| 제5구역 | 표고 30m 이상 - 최고높이 8m 이하 표고 50m 이상 - 최고높이 12m 이하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촌지구단위계획,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3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최고높이 4m 이하 | 최고높이 6m 이하 |
|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0m 이하 |
| 제4구역 | 최고높이 12m 이하 | |
| 제5구역 | 표고 30m 이상 - 최고높이 8m 이하 표고 50m 이상 - 최고높이 12m 이하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촌지구단위계획,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4,5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12) 서울 경교장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13) 환구단,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서울 한국은행 본관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 |
| 제2구역 | 개별심의 | |
| 제3구역 | 서울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2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 |
| 제2구역 | 개별검토 | |
| 제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14) 서울 약현성당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
|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
| 제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15) 서울 정동교회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 |
| 제2구역 | 개별심의 | |
|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2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 |
| 제2구역 | 개별검토 | |
| 제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16) 서울 명동성당, 구 서울역사

○ 현행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서울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조정(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5. 「속초 동명동 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재 「속초 동명동 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3.9.26.)를 거쳐 등록 예고한 「속초 동명동 성당」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속초 동명동 성당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로 7길 10-5(동명동 332)
 - 소유자 : ○○○○ ○○○○ ○○○○
 - 수량 : 1동(지상 1층)
 - 건립시기 : 1953년
 - 구조 및 규모 : 석재 조적조 및 목조트러스 지붕(280.20m²)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1.1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강원특별자치도 → 문화재청)
 - ('20.6.4.)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8.25.) :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등록 검토 '보류'
 - 추가 자료 조사 필요(내부 증축구조 및 지붕재 변화 등)
 - ('20.9.5.) :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등록 검토 결과 통보
 - ('21.8.27.) : 등록 검토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속초시 → 문화재청)
 - ('23.2.17.) : 등록 검토에 따른 추가 보완자료 제출(속초시 → 문화재청)
 - ('23.7.21.) : 관계전문가 보완조사 실시
 - ('23.7.24.)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증축부 건축물대장, 증축부 건축 재료 및 공사 관련자료 등
- ('23.8.8.) : 보완자료 제출(속초시 → 문화재청)
- ('23.9.26.)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등록 검토 '원안가결'
- (5) 등록예고 : '23.10.19. ~ 11.17. (30일간) * 의견 없음

라. 보완조사 의견(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 '23.7.21.)

- 6·25전쟁 기간 중 수복 지역에 건립되었던 성당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교회 사적 뿐만 아니라 건축사적으로도 그 희소성이 인정되는 만큼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보임
- 성당 측에서 추가적으로 발굴한 고증자료 등을 근거로 하면, 증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일부 외관상의 변화 역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유지해온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 역시 50년이 경과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기준에도 부합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0.6.4.)

- 본 성당은 속초시가 갖는 역사적 성격과 시대적, 사회적 의미를 온전하게 담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골룸반 외방선교회가 짓고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평성당이나 묵호성당처럼 표준 설계에 의해 지어지지 않음에 따라 건물의 원 모습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6.4.)

- 속초 동명동성당은 6·25전쟁 기간 중 미군이 수복한 38선 이북지역에 위치 하였으며 또한 당시 미군정 하에 지방자치권이 인정되었던 특수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건립되었다는 측면에서 희소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천주교 및 지역사적 측면에서의 상징성 및 역사성과 함께 본당 건물의 건축적 내력 등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비교적 잘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는 건축사적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증축된 면적이 비교적 크고 그로 인해 평면 형태뿐만 아니라, 구조체에 물리적인 변형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6.4.)

- 동명동성당은 한국전쟁 직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립되었으며,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등록문화재의 등록 여건상 형태와 재료, 공간적 변형이 크고, 주요구조부의 원형보존 판단이 어려운 점에 미루어 등록기준에 미흡하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6.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소장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자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3.6.27.)를 거쳐 등록 예고한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수량 | 규격(cm) | 제작연대 | 소유자 | 소재지 |
|------------------|---------|-----------|-------------|-------|----------------------------|
|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 16건 19점 | 532×386 등 | 1925년~1933년 | ○○○○○ | ○○○○ ○○○ ○○○ ○○○○○○○ |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0.4.~'10.11월) : '근대문화유산 음악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실시
 - ('22.9.7.) : 문화재 등록 신청(충청남도 → 문화재청)
 - ('23.4.2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3.6.27.) :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검토 '가결'
- (5) 등록예고 : '23.7.11.~8.10.(30일간) *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3.4.26.)
 - 색동회 회록은 색동회 창립 전후의 논의 과정과 분위기, 활동 방향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나, 그 내용은 매우 간략한 편이라는 아쉬움이 있음.
 - 검토 대상 유물 어린이날 행사 관련 자료 15건은 1920~1930년대 어린이날 행사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등록 가치가 있음.

현재까지 독립기념관 이외의 타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가 가장 대표적이며 희소성이 있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 ○○○(’23.4.26.)

- 색동회 회록은 방정환을 비롯한 청년 지식인들이 어린이운동에 준비하는 과정을 소상히 살필 수 있는 기록으로서 수기로 작성된 유일본이라는 점에서도 보존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으며, 일제강점기 어린이날은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촉구한 기념일로 역사적 의미가 큼.
- 본 유물 어린이날 포스터, 기, 선전지 등은 어린이날을 표상하는 상징물로서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높으며, 어린이날 표어 모음과 어린이날 행사 지침 등은 실제로 어린이날이 어떻게 중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개최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음.

○ ○○○○○○ ○○○○○○ ○○ ○○○(’23.4.26.)

- 색동회 회의록은 한국 어린이 문학과 운동의 기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유산이며, 유일한 기록으로서 보존 가치가 크며, 어린이날 포스터 및 깃발은 어린이 인권 보호와 소년 운동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근대 문화재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초창기 포스터 등은 모두 신문 등에 게재된 흑백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실물 포스터 및 깃발 등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며, 어린이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적 활용도도 매우 높으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검 토 사 항

7. 「안국동 별궁 후원 전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안국동 별궁 후원 전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5.1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3.8.1.)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안국동 별궁 후원 전각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17(안국동 175-112)
 - 수량 및 면적: 1동, 건축면적 63.79㎡, 지상1층
 - 구조: 목조 기와 건축물
 - 시기: 1880년경 건립(추정)
- (3) 검토사항: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3.5.19.):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3.7.9.): 등록신청 서류 보완(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3.8.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3.8.7.): 보완자료 제출요청(문화재청→서울특별시)
 - 요청사항: 건축물 이력 및 관련 고증자료 등
 - ('23.9.11.): 보완자료 제출(서울특별시→문화재청)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3.8.1.)
 - 경복궁 미술관(1915년 12월)이 건립된 이후 강녕전, 교태전 등 전각이 훼손되기 전의 상태를 기록한 일본나라문화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1917년 경성지도와 1921년 경성도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1927년 경성시가

도와 1936년 경성부대관에 이 건물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꾸준히 이 건물이 원래의 위치에 유지되어 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금은 모두 이축되었거나 훼손된 안국동 별궁의 후원 전각으로 그 장소성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현재의 서울공예박물관의 장소적 실체를 보여주는 건물로서 그 의미가 있음.

- 19세기 말 안국동 별궁 후원의 건물로서 원래의 단청과 개칠하여 사용된 20세기 초 별궁 건축물의 단청에 대한 실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근대기 단청 연구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이 건물이 서울공예박물관 내에 있어서 한옥과 단청에 관한 공예적 특성을 살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안국동 별궁은 조선 후기 마지막 별궁으로서, 후원 전각이 남아 있어서 안국동 별궁의 장소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다만 이 건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은 남아 있으나 1917년의 경성지도를 비롯한 각종 지도에 그림으로 남아 있고 안국동 별궁에 대한 다양한 신문자료나 기록들이 있어서 안국동 별궁의 후원 전각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문화재전문위원 ○○○('23.8.1.)

-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이 과거 별궁 영역 중 후원에 속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곳이 갖는 장소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동 건물이 별궁 후원에 지어진 서운정으로 특정하고 또 이것이 당시 별궁에 있었던 여러 전각 중 본래 위치에 현존하는 유일한 건물이라고 간주하기에는 관련 고증자료 등을 통해 보다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별궁이 훼손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건축적 내력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안국동 별궁의 또 다른 전각인 현광루와 경연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이전·복원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관련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동 건물은 일제강점기(1936년) 안국동 별궁 영역에 신축되었던 여러 한옥 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안국동 별궁 이전복원 수리보고서』, 2009년' 참조).
- 단청의 경우, 근대기 단청으로서의 특징과 함께 현존하는 조선시대 별궁 단청의 사례로서 그 희소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 동 건물이 갖는 진정성을 논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임. 특히 건축사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그 가치를 부여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3.8.1.)

- 본 문화재 등록 대상 건물이 보고서의 추정대로 옛 안국동 별궁의 '서운정'이라는 전각이었다고 한다면 이 건물은 옛 안국동 별궁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대표하는 건물, 특히 왕실의 건물이 근현대기를 거치며 변모되어간 모습과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음. 단 대상 건물의 원 용도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진 자료와 같이 옛 모습을 담고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반 민가에서 쓰지 않던 단청을 썼다는 것만으로 대상 건물을 옛 안국동 별궁의 '서운정'으로 특정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대상 건물을 부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활용계획의 취지에 맞게, 담장 및 하마비 등 건물 주변의 시설물도 활용계획에 포함시켜 건물과 함께 부지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대상 건축물의 가치 조사 및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보완 필요

○ 출석 9명 / 보류 8명, 조건부가결 1명

8.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 소장 「디젤난방차 905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디젤난방차 905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3.31.)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3.8.31./9.12.)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철도공사 철도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수량 | 규격(cm) | 제작연대 | 소유자 | 소재지 |
|------------|----|-------------------------------|-------|--------|-------|
| 디젤난방차 905호 | 1량 | 길이 1,300 높이 373.7 폭 300 | 1964년 | ○○○○○○ | ○○○○○ |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3.3.31.) : 문화재 등록신청(경기도→문화재청)
 - ('23.8.31./9.1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3.8.31.)
 - 본 유물은 1964년 인천공작장에서 제작한 디젤난방차 10량 가운데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됨. 근현대기 철도교통 난방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차량이며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디젤 난방차량임. 그러나 다수의 근대기 철도 차량이 이미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상황에서, 이 디젤난방 차량이 특별한 위상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려움. 철도난방 시스템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근대기 철도사의 흐름에서 보면 대표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9. 「디젤동차 672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 소장 「디젤동차 672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디젤동차 672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3.31.)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3.8.31./9.12.)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수량 | 규격(cm) | 제작연대 | 소유자 | 소재지 |
|-----------|----|-------------------------------|-------|--------|-------|
| 디젤동차 672호 | 1량 | 길이 2,150 높이 373 폭 298.3 | 1963년 | ○○○○○○ | ○○○○○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23.3.31.) : 문화재 등록신청(경기도→문화재청)
- ('23.8.31./9.1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3.8.31.)

- 디젤동차 672호는 이미 등록된 동차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특징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우선, 우리 기술로 제작한 차량이 아니며, 엔진 교체 이후 원형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음. 운행지역이 한정적이고 운행기간이 짧아 국내 철도사에서 대표성·역사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려움.

○ ○○○○○○○○○ ○○○ ○○○('23.8.31.)

10. 「안춘천 철교 상판 구조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 소장 「안춘천 철교 상판 구조물」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춘천 철교 상판 구조물」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3.31.)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3.8.31./9.12.)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수량 | 규격(cm) | 제작연대 | 소유자 | 소재지 |
|---------------|----|---------------------------|-------|--------|-------|
| 안춘천 철교 상판 구조물 | 1량 | 길이 720 높이 230 폭 300 | 1906년 | ○○○○○○ | ○○○○○ |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3.3.31.) : 문화재 등록신청(경기도→문화재청)
 - ('23.8.31./9.1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3.8.31.)
 - 신청 유물은 1909년부터 2021년까지 112년 동안 경인선 안춘천교에 설치되었던 철제 상판의 구조물의 일부임. 이 철제 상판은 1906년 미국 (American Bridge Company)에서 제작한 것으로 박스형 철제 상판(거더) 위에 침목과 레일이 설치된 형식임. 2021년 콘크리트 슬래브 방식으로 교체함에 따라 철거되었고 그 중 일부(7.2m)가 철도박물관으로 옮겨져 전시 중임.

11. 「부산도시철도 1호선 1편성(舊)」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소장 「부산도시철도 1호선 1편성(舊)」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도시철도 1호선 1편성(舊)」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4.3.)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3.9.15.)를 실시하였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부산교통공사 사장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수량 | 규격(m) | 제작연대 | 소유자 | 소재지 |
|-------------------|----|-----------------------------|-------|--------|-----------------------|
| 부산도시철도 1호선 1편성(舊) | 6량 | 길이 105 폭 2.78 높이 3.67 | 1984년 | ○○○○○○ | ○○○○○ ○○○ ○○○○ ○○○ |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3.4.3.) : 문화재 등록 신청(부산광역시 → 문화재청)
 - ('23.9.15.)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1> 참조

- 문화재위원 ○○○('23.9.15.)
 -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는 1984년 12월 10일 도입되어 1985년 7월 19일 첫 영업 운행에 들어감. 1호선 차량 6칸은 1985년 운행을 시작함. 서울을 제외한 지방 도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시철도 차량임. 그러나 서울도시철도(지하철) 1호선은 1974년 8월 개통되었고 당시 운행되었던 차량 10칸이 현재 남아 있음.
 - 서울도시철도 1호선이 국내 최초의 도시철도라는 점에서 부산의 도시철도 차량

은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서울도시철도의 최초 차량이 현재 신정 차량사업소에 보관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부산도시철도 차량을 등록하기는 어려움.

○ 문화재전문위원 ○○○('23.9.15.)

- 본 신청 유물은 1980년대 도시철도 기술을 보여준다는 역사성도 있고, 비수도권 지방 도시철도의 효시라는 점에서 대표성도 있으며, 편성 전체가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희소성도 높음.
- 다만, 부산도시철도 개통이 1985년의 일이므로, 등록문화재 지정 요건(50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여 현 시점에서 등록문화재 등록은 다소 무리가 있음. 이러한 요인들을 두루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부산광역시 등록문화재로 우선 신청할 것을 권고함.

○ ○○○○○○○○○○○ ○○○ ○○○('23.9.15.)

- 1001호 도시철도차량은 국산전동차/중형차량/스테인리스차체/자동제어운전의 국내 최초 차량으로 희소성과 대표성이 있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TC+M'+M+TC 4량을 1편성하여 좋은 교육 및 체험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등록가치 미흡

○ 출석 9명 / 부결 9명

12.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4」 보수정비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4」의 보수정비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2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4」 보수정비 설계(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영덕군수
- (2) 대상문화재명: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4」('19.11.04. 등록)
 -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666-7
- (3) 검토사항
 - 건축물 일부 철거(등록면적 조정)

| 구분 | 등록면적 | 현황 실측 (연)면적 | 보수정비계획 (연)면적 | 비고 |
|---------|-------|----------------|-----------------|-------|
| 근대상가주택4 | 89.3㎡ | 82.24㎡ | 69.48㎡ | 철거·조정 |

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 문화재위원 ○○○, 수리기술위원 ○○○('22.11.23.)
 - 본채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해설사 사무실 및 휴게실, 익랑은 다용도 상점(벽체 없는 내부 개방형)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대로변에 접해 있는 면에 조성된 공간은 보존하고, 증축된 공간은 철거한다.
 - 외부의 증축된 블록조(화장실, 연탄창고 등)은 철거한다.
 - 골목의 담장은 철거하며, 화장실(최소 규모)은 별동으로 신축한다.
 - 마당측 기단은 형성하되, 대로변과 골목쪽의 기단은 형성하지 않는다.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당시 면적을 확인하고, 등록 면적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않도록 한다.

○ 前 문화재위원 ○○○, 수리기술위원 ○○○('23.03.27.)

- 활용계획은 근린생활시설로 조성하여 사용하기로 함
- 골목측 담장은 철거하고 마당측 기단은 형성하되, 대로변과 골목쪽의 기단은 형성하지 않음
- 화장실은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기로 함

○ 前 문화재위원 ○○○('23.07.05.)

- 도로에 면한 부분은 추후 상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래 원형과 상가 활용 당시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점 보수 및 활용 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 기존 부엌 부분에 계획된 화장실2는 화장실1로 기능 역할이 충분하므로 설치하지 않는다.(추후 상점으로 활용 고려)
- 상점 계획부분(화장실2 포함)에서 한식 벽체는 존치하고 시멘트 블록조 벽체를 철거, 해체한 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상점 보수계획을 확정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 수리기술위원 ○○○('23.07.05.)

- 상가주택4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을 계획하였으나 설계용역 과정에서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및 사무실 공간으로 검토하게 됨(게스트하우스 건물은 별도 매입)
- 이에, 본채는 문화해설사 사무실 및 휴게실 공간으로 익랑은 다용도 상가(벽체 없는 내부 개방형)로 활용을 계획하게 됨
- 계획 배치도의 화장실2와 탈의실은 상가 공간으로 확장을 권장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등록구역 내 증축부분을 철거 없이 활용하도록 함

○ 출석 8명 / 부결 8명

보고 사항

13.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등록(면적) 정정 고시 보고

가. 보고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의 등록 면적을 정정하여 고시('23.11.24.)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 (1) 대상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18.5.8. 등록)
- (2) 처리내용: 등록 정정 고시('23.11.24.)
- (3) 정정사항: 등록 면적

| 지번 | 지목 | 대지면적(m ²) | 등록면적(m ²) | |
|--------------------------|----|-----------------------|-----------------------|-------|
| | | | 당초 | 정정 후 |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1123 | 대 | 622.3 | 338.1 | 422.5 |

- (4) 정정사유: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등록 면적 현행화
- (5) 사전 서면검토
 - ('23.11.17.)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의 등록 면적 정정 고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실시
 - 관계전문가 검토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등록문화재인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에 대한 등록 면적(구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 및 고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8명 / 원안접수 8명